

[별표 3] <신설 2009.6.16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 사항	해당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1)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	법 제32조제1항 제1호	100	150	200
2) 법 제11조제3항·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	법 제32조제1항 제2호	100	150	200
3) 법 제11조제4항·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	법 제32조제1항 제3호	50	100	200
4) 법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32조제1항 제4호	50	70	100
5)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	법 제32조제1항 제5호			

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가)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나)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				
6)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	법 제32조제1항 제6호	100	150	200
가)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		50	70	100
나)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				
7)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, 폐기물, 유해화학물질, 오수·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토양에 버린 자	법 제32조제1항 제7호	100	150	200
8)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	법 제32조제1항 제8호	50	70	100
9) 법 제23조의2제4항 및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	법 제32조제1항 제9호	150	170	200
10)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	법 제32조제1항 제10호	50	100	200
11) 법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	법 제32조제1항 제11호	50	100	200

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2) 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 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	법 제32조제1항 제12호	100	150	200
---	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